구매 거래 기본 계약서 124-04-48026

발주자 :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

수 주 자 아 이 엠 티 양 승 호 경기 화성 태안 능 636-

> 반도체장비 및 기계부품

- (계약 당사자) 상기 발주자를 이하 "갑"이라 하고 수주자를 이하 "을"이라 한다. 제 1 조
- (목적) "갑"과 "을"을 기본 계약에 따른 (이하 "개별 계약"이라 칭함.)을 성실히 이행함 제 2 조 으로써 "갑"과 "을"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계약 제품) 제 3조

- 1) 계약 제품은 개별 계약에 의한다.
- 2) 계약 제품은 "갑" 과 "을"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할 수있다.
- 3) "을"은 계약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"갑"의 동의 없이 국내외 제 3 자 또는 타인에게 판매, 양도 할 수 없다.

제 4조 (단가 결정)

- 1) 제품의 가격은 "갑"과 "을" 상호간의 이익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2) 제품의 단가는 개별 계약으로 결정한다.
- 3) 계약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는 "을"이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 5조 (발주) "갑"은 "을"에게 구매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납기 15일전에 주문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, 단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 6 조 (납품)

- 1) 납기는 "갑"이 발행한 주문서에 의거하며 "을"은 주문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"갑"에게 납품일지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2) 납품이라 함은 제품을 "을"의 비용으로 생산하여 "갑"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"갑"의 창고에 입고된 시점으로 정한다.
- 3) 납기 변경은 "갑"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만 변경 할 수 있다.
- 4) 신 MODEL(NEW PROJECT)개발을 위하여 SAMPLE 요청시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.
- 5) "을"은 납품시 "갑"이 정하는 서류(납품서, 검사 성적서 및 개별 계약에 의거하여) 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6) "을"의 납기 지연에 따는 지체 상금은 "갑"의 생산 지연에 의한 손실금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하며 단, "갑"이 "을"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또는 "갑"의 사정에 의한 수입 검사 지연시에는 지체 상금이 면제된다.

제 7조 (품질검사)

- 1) "갑"은 "을"에게 납품을 받을 때마다 검사하여 합격/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.
- 2) 수입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"을"을 3일 이내 회수 또는 2일 이내 선별하여 "갑"의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생산 중 원자재 불량은 1:1로 교환 조치한다.
- 3) "을"은 구매 시방서에 기재된 "갑"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

Integreated Process Systems

입고한다.

제 8조 (지불조건)지불 조건은 개별 계약의 기준에 의거한다.

제 9조 (계약 해지)

- 1) "갑" 또는 "을"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 할 수 있다.
- *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일 까지 납품하지 않은 경우
- *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용 SAMPLE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
- * "갑"또는 "을"이 발행한 어음/수표의 부도가 발행했을 때
- * "갑"또는 "을"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일개 조항이라도 위반 했을 때
- 2) "갑"과 "을"이 전항에 따라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해지 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(비밀보장) "갑"과 "을"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의해 알게 된 계약 당사자의 제 10조 업무적 기술 및 제반 사항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(불가항력)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항 또는 일부는 전쟁, 화재 등의 천재지변의 제 11조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의 상호 협력에 의해 의무 이행이 변제될 수 있다.
- 제 12 조 (권리 의무와 양도)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의거 발생되는 권리나 의무는 제 3 자에게 양도 승계 할 수 없다.
- 제 13 조 (개별 계약 및 특약 사항)
 - 1) 개별 계약은 "갑"과 "을"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, 본 계약의 규정에 의거 정할 수 있다.
 - 2)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변경할 수 있다.
 - 3) "을"은 "갑"이 지정한 부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, "갑"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사용하며 이를 불이행할 때에 "을"은 모든 책임을 "갑"에게 부담한다.
- 계약 기간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1.06.015.일부터 2004.05.31. 까지 하며 단, 계약 만료 제 14 조 3개월 전까지 "갑"또는 "을"로부터 본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하게 연장되고 이후의 갱신에 대해서도 동일하다.
- 제 15 조 (기타)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함.

2001 년 06 월 01 일

갑 : 주식회사 아이피에스

평택시 지제동 33 번지

대표이사이용한

124-04-48026

아이엠티 양승호

경기 화성 태안 능 636-4

제조 기계부품